

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교육 안내

국토교통부고시 법정 교육기관

2024년 10월 25일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
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
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.

또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
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서
연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
700세대
이상



교육기관
대한주택관리사협회

(국토교통부고시 제2024-603호, 2024. 11. 12.)



교육대상
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 전원



교육시간 및 방법
연 4시간 / 온라인 교육



esp.khma.org

신규 사이트 오픈



교육 접수기간 및 교육기간
• 교육 접수기간: 매월 1일 ~ 20일
• 교육기간: 접수일 ~ 해당 월 말일

온라인교육 신청



2026년 신규 교육 내용

1강내용

- 층간소음 뉴스(최신 경향)
- 공동주택과 층간소음의 이해
- 층간소음 분쟁 해결 절차와 올바른 방향

2강내용

- 층간소음의 조사 및 측정
- 분쟁조정 방법 및 상담
-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분쟁 미해결 시 방법

3강내용

- 층간소음 분쟁조정 해결 사례
-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우수사례